

1. 개정이유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(예정)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
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규칙의 신생아공급 신설내용 반영(안 제7조)

- 공급물량의 20%를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배정하되,
그 물량 안에서 소득요건을 반영하여 차등 배정
-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

나. 특별공급 1순위 요건 구체화(안 제7조)

- 1순위 요건의 자녀를 미성년 자녀임을 명시하여 명확화

다. 부부 개별신청 허용에 따른 규칙의 접수증 발급의무 반영(안 제8조)

- 사업주체가 규칙에 따른 주택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, 신청자에게 접수
증을 교부하도록 규정

라. 휴직자등 소득산정 방식 구체화(안 제12조)

- 소득없이 휴직한 자 등의 경우 동일직장·동일직급·동일호봉인 자의
동의를 받아 해당인의 서류로 소득을 산정하여 운영 중이나, 적용대상을
지침에 명확히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**자녀가**”를 “**미성년 자녀가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.

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**받아야**”를 “**받아야 하며,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**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하고,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**”을 “**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(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**”을 “**(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,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**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**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**”를 “**소득 없이 휴직한**”

경우 등으로 인하여”로 한다.

별표1을 별표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<별표1> 자격입증 제출서류

종류	세부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족관계증명서 (기본증명서)	* (기본)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* (추가)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* (추가)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는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혼인관계증명서	* 혼인신고일 확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신진단서	* 임신여부 확인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약통장가입 확인서	*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(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	* 세대주, 세대원 및 주소지 등 확인 *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	*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,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입증 서류목록	*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해당자격</th> <th>소득입증 제출서류</th> <th>발급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근 로 자</td> <td>일반근로자</td> <td>*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, 재직증명서</td> <td>* 해당직장 * 세무서</td> </tr> <tr> <td>신규취업자</td> <td>*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* 재직증명서</td> <td>* 해당직장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자 영 업 자</td> <td>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</td> <td>*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* 사업자등록증</td> <td>* 세무서</td> </tr> <tr> <td>신규사업자</td> <td>*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* 사업자등록증</td> <td>* 국민연금 관리공단 * 세무서</td> </tr> <tr> <td>법인대표자</td> <td>*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제무재표</td> <td>* 세무서 * 해당직장</td> </tr> <tr> <td>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</td> <td>*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</td> <td>* 세무서 * 해당직장</td> </tr> <tr> <td>국민기초생활 수급자</td> <td>* 수급자 증명서</td> <td>* 동사무소</td> </tr> <tr> <td>일용근로소득자</td> <td>*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영수증</td> <td>* 세무서 * 해당직장</td> </tr> <tr> <td>무직자</td> <td>*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* 비사업자 확인 각서 (별지서식 2)</td> <td>* 세무서 * 접수장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근 로 자	일반근로자	*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, 재직증명서	* 해당직장 * 세무서	신규취업자	*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* 재직증명서	* 해당직장	자 영 업 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*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*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	신규사업자	*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* 사업자등록증	* 국민연금 관리공단 * 세무서	법인대표자	*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제무재표	* 세무서 * 해당직장	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*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	* 세무서 * 해당직장	국민기초생활 수급자	* 수급자 증명서	* 동사무소	일용근로소득자	*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영수증	* 세무서 * 해당직장	무직자	*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* 비사업자 확인 각서 (별지서식 2)	* 세무서 * 접수장소
	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근 로 자	일반근로자	*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, 재직증명서	* 해당직장 * 세무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신규취업자	*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* 재직증명서	* 해당직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 영 업 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*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* 사업자등록증	* 세무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신규사업자	*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* 사업자등록증	* 국민연금 관리공단 * 세무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법인대표자	*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제무재표	* 세무서 * 해당직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*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	* 세무서 * 해당직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국민기초생활 수급자	* 수급자 증명서	* 동사무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용근로소득자	*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영수증	* 세무서 * 해당직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무직자	*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* 비사업자 확인 각서 (별지서식 2)	* 세무서 * 접수장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산입증 서류목록	*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09조의2 및 「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“부동산 소유 현황”(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),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*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) 및 같은조 제4항제1호라목2)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비여부		
혼인신고일	☞ 혼인관계증명서	
미성년인 자녀수 및 출생신고일 (입양신고일)	☞ 가족관계증명서	
	필요시, 기본증명서, 임신진단서	
	입양관계증명서	
	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
	※ (추가)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는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	
월평균 소득	☞ 소득증빙서류[별표1]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 ※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	
	가구총계	원
	신청인	원 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
	배우자	원 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
	세대원	원 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
	세대원	원 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
청약통장 가입기간	☞ 청약통장가입확인서	
무주택	☞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으로 확인	
당해지역 거주여부	☞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)	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 퍼센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)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.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.

<삭 제>

2.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 퍼센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)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.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.

<삭 제>

3.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.

1.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퍼센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)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.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.

2.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)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.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.

⑥ (생략)

제8조(신청접수) ① (생략)

② 사업주체는 규칙 제19조 및 제5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아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소득기준)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하고,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④ 제1항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(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의 140퍼센트(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

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신청접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받아야
하며,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
부하여야 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소득기준) 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(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및

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)를 넘지 않아야 한다.

⑤ ~ ⑨ (생략)

제12조(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) ① ~ ③ (생략)

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.

제3호,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-----

-----.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소득 없이 휴직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-----

-----.